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8가합409960 주권인도 청구의 소
원 고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권대현, 기소현
피 고 주식회사 E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승일
변 론 종 결 2020. 5. 26.
판 결 선 고 2020. 7. 21.

주 문

1. 피고는,
 - 가. 원고 A으로부터 19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 75,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고,



나. 원고 B으로부터 7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B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 30,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며,
다. 원고 C으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C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 20,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

2. 원고 D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D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 D로부터 3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D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 180,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의약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상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주식회사이고, 원고 A은 F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원고 B은 G대학교 치과마취과 교수, 원고 C은 변리사, 원고 D은 피고 회사에서 2012. 1. 1.부터 2016. 12. 5.까지 재직하면서 부사장 직급으로 피고 회사 연구개발본부 연구소장, 헬스케어본부 본부장 등에 재임하던



중 퇴직한 자로, 피고 회사와 아래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계약(이를 이하 '이 사건 스톡옵션 계약'이라 하고, 개개의 계약들은 순번으로 특정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원고	부여일	행사 기간	부여 주식수 (주)	주당 행사가격 (원)	행사가격 (부여주식수× 행사가격, 원)
1	A	2013. 11. 04.	2019. 11. 05. ~ 2024. 11. 04.	20,000	2,000	40,000,000
2		2014. 06. 27.	2018. 06. 28. ~ 2023. 06. 27.	50,000	2,500	125,000,000
3		2015. 10. 22.	2019. 10. 22. ~ 2024. 10. 21.	5,000	5,000	25,000,000
4	B	2014. 06. 27.	2018. 06. 28. ~ 2023. 06. 27.	30,000	2,500	75,000,000
5	C	2014. 06. 27.	2018. 06. 28. ~ 2023. 06. 27.	20,000	2,500	50,000,000
6	D	2012. 03. 10.	2018. 03. 11. ~ 2024. 03. 10.	80,000	1,500	120,000,000
7		2013. 11. 04.	2019. 11. 05. ~ 2024. 11. 04.	100,000	2,000	200,000,000

2) 앞서 본 내용 외에 이 사건 스톡옵션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행사조건

○ 이 사건 스톡옵션 계약 순번 1 내지 4, 5, 7(원고들)

제3조 [스톡옵션의 행사기간 및 조건]

스톡옵션 행사일 현재 피고 회사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 원고들이 사망, 정년퇴직, 임원으로의 승진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행사기간 동안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으며, 원고들이 사망한 때에는 원고들의 상속인이 그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 이 사건 스톡옵션 계약 순번 6(원고 D)

제3조 [스톡옵션의 행사기간 및 조건]



스톡옵션 행사일 현재 재직중이어야 한다.

단, 원고 D이 사망, 정년퇴직, 임원으로의 승진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행사기간 동안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으며, 원고 D이 사망한 때에는 원고 D의 상속인이 그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취소사유

○ 이 사건 스톡옵션 계약 순번 1, 3(원고 A)

제7조 [스톡옵션 부여의 취소]

피고 회사는 다음의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의결에 의해 스톡옵션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① 원고 A이 본 계약 이후 원활한 업무 협력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② 원고 A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③ 피고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스톡옵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이 사건 스톡옵션 계약 순번 2, 4, 5, 7(원고들)

제7조 [스톡옵션 부여의 취소]

피고 회사는 다음의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의결에 의해 스톡옵션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① 원고들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② 피고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스톡옵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이 사건 스톡옵션 계약 순번 6(원고 D)

제7조 [스톡옵션 부여의 취소]

피고 회사는 다음의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의결에 의해 스톡옵션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① 원고 D이 사망, 정년퇴직, 임원으로의 승진 및 임원이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② 원고 D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③ 피고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스톡옵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다) 그 밖의 내용



제4조 [스톡옵션의 행사방법 및 절차]

① 스톡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것은 피고 회사 스톡옵션 운영 규정, 관련 법령 및 증권
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3) 한편, 피고 회사의 정관 및 피고 회사 스톡옵션 운영규정에서는 주식매수선택
권 부여 취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피고 회사 정관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피고 회사 스톡옵션 운영규정

제8조(스톡옵션 부여의 취소)

회사는 다음의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해 스톡옵션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① 당해 임·직원이 사망, 정년퇴직, 임원으로의 승진 이외의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②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 ③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스톡옵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④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외부 전문가가 스톡옵션 부여계약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ㄱ. 부여대상자가 경업관계에 있는 회사로 이직한 경우
 - ㄴ. 부여대상자가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수행 중인 과업의 내용을 당사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한 경우
 - ㄷ. 부여대상자가 수행하기로 한 과업의 내용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여도가 없는 경우
 - ㄹ. 부여대상자가 스톡옵션 부여계약 이후 회사와 원활한 업무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ㅁ. 기타 부여대상자가 회사와의 계약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다. 원고 D의 퇴직



원고 D은 2016. 12. 5. 피고 회사에 권고사직(회사 사정으로 인한 대표이사의 사직 권고)을 사유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원고 A, B, C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1) 피고 회사는 스톡옵션 부여 후 위 원고들의 기여도 평가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2018. 2.경 위 원고들에게 업무협력 및 연구개발 기여도 평가서를 작성·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① 원고 A은 H 추출물 유래 진통제 개발 등을 통해 피고 회사에 기여하였다는 취지의, ② 원고 B은 H 추출물 유래 진통제 개발,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 기술이전, 경구형 당뇨병성 황반부종 치료제 기술이전 등에 관한 검토 및 특허전략 수립 등을 통해 피고 회사에 기여하였다는 취지의, ③ 원고 C은 H 추출물 유래 진통제 개발,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 기술이전, 경구형 당뇨병성 황반부종 치료제 기술이전 등에 관한 특허 관련 검토 등을 통해 피고 회사에 기여하였다는 취지의 각 평가서를 작성·제출하였다.

2) 그러나 피고 회사는 2018. 4. 5.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A에 대하여는 기술이전사¹⁾ 경영자로서 의무 이행 외 최근 2년간 직접적인 기여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B에 대하여는 연구개발 및 공동연구 등 자문의 기여 없음을 이유로, 원고 C에 대하여는 관련 사업인 H, 아토피 사업중단을 이유로 앞서 실시한 이 사건 스톡옵션 계약에 따른 위 원고들의 스톡옵션 전부를 각 취소하기로 결의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18. 4.경 위 원고들에 대한 기여도 평가결과 위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이후 피고 회사가 달성하고자 하는 연구개발에 대한 기여를 한 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위 원고들을 상대로

1) 피고 회사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I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스톡옵션 부여를 취소하는 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들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협조 요청

원고들은 2018. 11. 16. 이 사건 스톡옵션 계약 순번 2, 4, 5, 6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 위 계약에 따라 장차 피고 회사 발행 주식에 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므로, 주금납입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으나, 피고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8호증, 을 제1, 2, 3, 5, 6, 7, 4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스톡옵션 계약 순번 2, 4, 5, 6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은 이 사건 소제기일 무렵 행사 기간이 도래하였고, 이 사건 스톡옵션 계약 순번 1, 3, 7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제출일 무렵 행사 기간이 도래하였다. 한편, 원고는 그 무렵 위 계약에 따른 각 행사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송달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A으로부터 행사금액 합계 19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 75,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원고 B으로부터 행사금액 7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B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 30,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원고 C로부터 행사금액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C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 20,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원고 D로부터 행사금액 합계



3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D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 180,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 A, B, C의 청구

가) 긴밀한 협조에 관한 조건 성취 여부

(1)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스톡옵션 계약은 그 행사일까지 위 원고들과 피고 회사와 사이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의 조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먼저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8. 12. 20.경 및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인 2020. 1. 31.경 위와 같은 조건이 성취되어 위 원고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협조란 힘을 보태어 돕는 것을 의미하는 불확정적인 개념에 불과하고, 위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위하여 협조를 할 구체적인 업무 및 협조를 위해 유지되어야 할 계약관계 등이 이 사건 스톡옵션 계약상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위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외부 전문가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므로 위 원고들의 협조란 피고 회사의 자문이나 협조, 연구 요청 등에 응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원고들이 외부 전문가로서 피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문 내지는 요청 등을 행사일 무렵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등으로 협조 관계



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 긴밀한 협조에 관한 조건은 성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 8, 9, 10, 13, 15, 18, 23, 24호증, 을 제8, 11 내지 37, 40, 41, 47, 4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 A은 F대학교 교수로서 피고 회사, 주식회사 I, F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진통제 관련 기술이전에 관여하고, H 추출물을 이용한 진통제 개발 연구를 하였고, 원고 B, C도 H 추출물의 진통제 개발,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 기술이전, 경구형 당뇨병성 황반부종 치료제 기술이전과 관련한 특허 관련 검토 등의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회사의 H 추출물을 이용한 진통제 개발 연구 사업 및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 기술이전 관련 사업 등은 현재 중단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스톡옵션 계약상 관련 연구의 성공 등이 스톡옵션 행사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함께 추진하던 신약 개발이나 그 밖의 연구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들이 협조 의사를 가지고 있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협조 관계가 깨어진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위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와의 계약이나 그 밖의 요청에 따라 신약 개발 및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회사가 협조를 요청한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들에 대한 행사일 현재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행사조건은 성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 회사의 주권 교부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스톡옵션 계약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조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스톡옵션 계약 순번 2, 4, 5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은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행사 기간 내인 2018. 12. 20., 이 사



건 스톡옵션 계약 순번 1,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가 행사 기간 내인 2020. 1. 31. 피고 회사에 각 송달됨에 따라 행사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A으로부터 행사금액 합계 190,000,000원(= 순번 1 40,000,000원 + 순번 2 125,000,000원 + 순번 3 2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 75,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원고 B으로부터 행사금액 7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B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 30,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원고 C으로부터 행사금액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C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 20,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D의 청구

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조건 충족 여부

(1) 이 사건 스톡옵션 계약에 따른 행사조건 충족 여부

이 사건 스톡옵션 계약 순번 6은 행사 당시 원고 D이 재직중에 있음을, 순번 7은 행사 당시 원고 D이 피고 회사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야 함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조건으로 하고 있고, 원고 D이 2016. 12. 5. 피고 회사에 권고사직(회사 사정으로 인한 대표이사의 사직 권고)을 사유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원고 D은 피고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피고 회사와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 D과 피고 회사 사이의 긴밀한 협조는 원고 D이 피고 회사에 재직하면서 피고 회사를 위한 업무를 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이고, 행사조건 중에 '원고 D이 사망, 정년퇴직, 임원으로의 승진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행사기간 동안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기재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긴밀한 협조'에



관한 행사조건도 원고 D이 피고 회사에 재직할 것을 전제로 하는 행사조건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 D은 이 사건 스톡옵션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벤처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행사조건 충족여부

(가) 원고 D의 주장요지

피고 회사는 벤처기업으로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제2항에 의하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등이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 등이 해당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원고 D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반복적으로 사직을 강요당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였고, 이는 원고 D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 D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행사조건 충족여부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제2항이 적용되는 벤처기업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법령에 어긋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조건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D이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D이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같은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관계의 종료는 권고사직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고, 원고 D의 사직의 의사표



시를 피고 회사에서 수용함에 따라 근로관계를 합의에 따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이라는 점만으로 원고 D의 퇴직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녹취록(갑 제6호증)에 의할 때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원고 D의 성과나 근무태도 등을 비난하면서 임금 삭감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 D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피고 회사에서 퇴사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표시한 의사표시가 사회통념상 사직의 의사가 없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는 행위이거나, 강요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임금 삭감이나 사직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 등을 할 것을 거론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D로서는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고, 징계절차에서 징계사유를 다투는 것이 가능함에도 스스로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요구에 응하여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D의 퇴사를 오로지 피고 회사의 사정에 의한 퇴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 D은 퇴사 이후 퇴사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스톡옵션 계약에 의하면 원고 D이 그의 의사에 따라 퇴직을 한 경우, 그것이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사직임이 따로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일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임에도 원고 D이 퇴사 과정에서 부여된 스톡옵션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협상이나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 D이 그의 귀책사유 없이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판단

따라서, 원고 D은 이 사건 스톡옵션 계약에 따른 행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회사의 원고 A, B, C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스톡옵션 계약 및 피고 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운영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는 위 원고들의 기여도를 평가한 후 기여도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 A, B, C은 이 사건 스톡옵션 계약 이후 피고 회사에 기여한 바가 없다. 특히, 원고 A이 주도한 H 추출물을 이용한 진통제 개발 연구 등의 신약 개발 과제가 실패하여, 피고 회사는 연구기회의 상실이나 다국적 제약회사로부터의 신뢰 상실 등의 피해를 입었고, 원고 B의 경우 H 추출물을 이용한 진통제 개발과 관련하여 해당 특허에 신약후보물질의 유효구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검증하지 못하고,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 기술이전과 관련한 신약 후보물질의 발굴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증하지 못하는 등 부실한 자문 및 검토관여로 피고 회사가 손실을 입게 하였으며, 원고 C도 담당한 특허 사항에 대하여 특허출원에 관한 전문가로서 기여를 하지 못하고, 특허출원에 실패하는 등으로 피고 회사에 손실을 가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3 내지 8, 11 내지 37, 40, 41, 42, 43, 44, 47, 48, 49, 50, 5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스톡옵션 부여 취소의 효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스톡옵션 계약 순번 2, 4, 5(위 원고들)의 제7조에서는 주식매수선택



권 부여 취소 사유를 '위 원고들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피고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스톡옵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스톡옵션 계약 순번 1, 3(원고 A)의 제7조에서는 위 사유에 '원고 A이 계약 이후 원활한 업무 협력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추가하고 있을 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사유를 피고 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운영규정에 유보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운영규정에서 '부여대상자가 수행하기로 한 과업의 내용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여도가 없는 경우'를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이를 근거로 위 원고들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또한 위 규정에 따라 '부여대상자가 수행하기로 한 과업의 내용'에 관한 평가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사유로 하기 위해서는, 위 원고들이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이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스톡옵션 계약 등에 의해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봐도, 위 원고들이 수행하기로 한 과업을 특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③ 피고 회사는 위 원고들의 잘못으로 피고 회사가 연구 실패나 특허출원 실패 등을 하여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원고들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피고 회사가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④ 원고 A은 피고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외부 전문가이고, 이 사건 스톡옵션 계약상 협력관계의 근거가 되는 계약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이 피고 회사의 업무협력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이 사건 스톡옵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볼 것인데, 이를 인정할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1-08-27

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C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D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구광현

 판사 박애경

 판사 정우용